

교원 인사승진에 관한 내규

제1조 (목적) 본 법인 정관 제41조 2항 제41조의 2, 제41조의 3 및 본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승진을 엄정하고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인사관리의 합리적 운영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기와 적용범위) 승진은 매년 4월 1일과 10월 1일로 하며 교원 승진에 관하여 정관 및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본 내규에 따른다.

제3조 ① (승진소요기간)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삭제<2012. 9. 28.>
2. 조교수 → 부교수 6년<개정일: 2012. 9. 28.>
3. 부교수 → 교수 5년

② 박사학위 미소지 교원의 경우 각 단계별로 1년의 승진소요기간을 추가하여 적용한다.<신설일: 2013. 4. 11.>

제4조 (평가내용) ① 교원 승진의 평가 내용은 교육, 연구, 봉사, 근태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근태에 관한 사항은 평가 영역을 교수로서의 기본자질(40), 대학에 관한 기여도(40), 교단 및 사회의 기여도(20)로 구분하여 총100점으로 평가되고 판정은 각 평가 영역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80점 이상을 합격 평점으로 한다.<개정일: 2011. 9. 1.>

③ 연구실적물의 심사는 교수업적평가 시행세칙에 따른다.

1. 연구실적물에 대하여는 해당 전공분야에 관한 연구실적물로서 형식과 내용이 논문체계를 갖춘 것으로 한다.
2. 선교사 전임교원은 연구실적물 평가는 하지 않는다.
3.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평가한다.<신설 2015.09.01.>

제5조 (평가방법) <개정일: 2011. 9. 1., 2013. 4. 11.>

1. 교수 승진

교수승진은 아래 사항을 충족시켜야 한다.

- ① 부교수 재직기간 중 교수업적평가의 교육 및 봉사영역 취득점수가 각 영역별 기준점수의 합을 초과하여야 한다.
- ② 연구점수: 부교수 재직기간중의 연구점수는 2,00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박사학위 미소지 교원은 2,400점)
- ③ 인문사회계열의 필수 업적은 다음 각 호 1을 충족하여 1,20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교수업적평가 배점 준용)
 - 1) 단독전문학술저서
 - 2) SSCI급 국제전문학술지

- 3) 심사제도가 있는 국제일반학술지
- 4) 학진등재지(등재후보지포함)
- 5) 전문학술도서의 단독번역
- ④ 예능계열의 경우 필수연구업적은 교수업적평가에서 규정하는 비중있는 독주회 3회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부교수 승진

- ①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할 경우에는 교수업적평가의 교육, 봉사 영역 취득점수가 각 영역별 기준점수의 합을 초과하여야 한다.
- ② 연구점수: 조교수 재직기간 중의 연구점수는 2,40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박사학위 미소지 교원은 2,800점).
- ③ 인문사회계열의 필수 업적은 다음 각 호 1을 충족하여 120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교수업적평가 배점 준용)
 - 1) 단독전문학술저서
 - 2) SSCI급 국제전문학술지
 - 3) 심사제도가 있는 국제일반학술지
 - 4) 학진등재지(등재후보지포함)
 - 5) 전문학술도서의 단독번역
- ④ 예능계열의 경우 필수연구업적은 교수업적평가에서 규정하는 비중있는 독주회 3회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삭제: 2013. 4. 15.>

4. 근태평가

총장, 교무처장, 피임용자가 속해 있는 대학원의 원장, 혹은 학부의 학과장이 교원 승진 및 재임용 근태평가조서(별표1, 별표2)에 따라 평가한다.

제6조 (승진 절차) ① 피임용자는 승진신청서와 기간 내의 교수업적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한다.

②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의 “근태평가조서”, “교수업적평가보고서”에 대한 심사와 교원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이사장에게 교원 승진임용을 제청한다.<개정 2011. 1. 28.>

제6조의2 (교수승진 등위계산) 교수직급정원과 관련한 평가는 아래 영역별 기준에 의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신설 2012. 2. 17.>

1) 영역별 배점

업적평가 - 교육(20)

업적평가 - 연구(40)

근무평가 - 재직경력(20)

근무평가 - 근태(20)

2) 업적평가(교육, 연구)는 최근 3년간의 연간 교수업적평가 영역별 취득점수의 합

을 기본점수의 합으로 나눈 점수를 사용한다.

- 3) 근무평가-재직경력(20)은 임용일부터의 근속일을 기준으로 한다.
- 4) 근무평가-근태(20)는 근태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 5) 각 영역별 등위 1등은 배점 전체를, 차등위부터는 2점씩 감점하여 총점 계산
- 6) 총점이 동점인 경우에는 재직경력, 연구, 교육, 근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 결정함.

제7조 (평가점수의 제출) 평가내용은 인비로 처리하여 인사위원장에게 제출한다.

제8조 (준용규정) 내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교육법전 대학교원인사관리지침’과 본 대학 ‘교원인사규정’에 준하여 평가 심사할 수 있다.

제9조 (내규의 개정) 이 내규의 개정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로 시행한다. <개정 2011. 1. 28.>

부 칙(1)

- 1.(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0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4조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9월 1일 이후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2년 2월 1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조교수 최초임용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제3조와 관련하여 부칙 ①항의 시행일 이전에 조교수로 최초 임용된 교원은 2년의 전임강사 경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3년 4월 15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교원 승진 및 재임용 근태평가조서

피평가자	소속 : 직위 : 성명 :	확 인 자	위원장 : (인)			
구분 평정영역	평 정 항 목	평 가				
		수	우	미	양	가
1. 교수로서의 기본자질 (40)	① 교육자로서의 인격과 품위 (10)	10	8	6	4	2
	② 학문적 성취(연구실적) (10)	10	9	8	7	6
	③ 교육평가(강의 및 학생지도) (10)	10	8	6	4	2
	④ 동료교수와의 인화력 (5)	5	4	3	2	1
	⑤ 출근상황(강의일수 및 휴강상황) (5)	10	8	6	4	2
2. 대학에 관한 기여도 (40)	① 대학 정책 홍보 및 기여 (5)	5	4	3	2	1
	② 학생 입장 지도 참여도 (10)	/	/	/	/	/
	③ 행정협조 (10)	/	/	/	/	/
	④ 학교 행사 참여도 (10)	/	/	/	/	/
	⑤ 발전기금 기부 및 유치 (5)	/	/	/	/	/
3. 신앙 및 교회/사회에 대한 기여도 (20)	① 채플참석(교직원 및 학생채플) (10)	/	/	/	/	/
	② 학술 및 사회단체 활동	/	/	/	/	/
	③ 교회 및 교계활동 (5)	/	/	/	/	/
총 평						
평가자	직 명		성 명	(인)		

* 각 평가 영역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승진, 정년전환은 80점 이상을, 재임용은 75 점 이상을 합격 평점으로 한다.

【별표2】

근태 정량 척도 평가 기준

① 학생임장지도

- 업적평가 1-2-1 : 학생 임장 지도 (해당기간 연간 업적평가점수의 평균)
 - 90점 이상 : 5점
 - 80점 이상 : 4점
 - 70점 이상 : 3점
 - 60건 이상 : 2점
 - 60건 미만 : 1점

② 행정협조

- 근태에 반영됨을 적시하여 서면으로 공지된 행정 사항에 대해 기한내 협조되지 않을 경우 적용
 - 전 행정부서 취합
 - 10점 만점으로 건당 2건씩 감점

③ 학교 행사 참여도

- 업적평가 3-1-4 (4,5,6) : 회의 및 기타활동(학교 주관 학교행사 참가)
 - >해당 기간 총 참석횟수/총 횟수*100
 - 80%이상 : 10점
 - 70%이상 : 8점
 - 60%이상 : 6점
 - 50%이상 : 4점
 - 기 타 : 2점

④ 발전기금 기부 및 유치

- 업적평가 3-4-1, 3-4-2 : 대학발전기금
 - >해당 기간 발전기금 기부 및 유치 총금액 기준
 - 1천만원 이상 : 5점
 - 7백만원 이상 : 4점
 - 5백만원 이상 : 3점
 - 2백만원 이상 : 2점
 - 기 타 : 1점

⑤ 채플참석(교직원 및 학생채플)

- 업적평가 3-1-4 (1,2,3) : 예배, 회의 및 기타활동(교직원예배, 학교채플, 신앙수련회)
 - >해당 기간 총 참석횟수/총 횟수*100
 - 80%이상 : 10점
 - 70%이상 : 8점
 - 60%이상 : 6점
 - 50%이상 : 4점
 - 기 타 : 2점

⑥ 공익 단체 활동

- 업적평가 3-3-2 : 국내외 각종 기구위원(해당기간 연간 업적평가점수의 평균)

10점 이상 : 5점

8점 이상 : 4점

6점 이상 : 3점

4점 이상 : 2점

기타 : 1점

⑦ 교단 및 교계활동

- 업적평가 3-3-1 : 교단 및 교계활동

50점 이상 : 5점

40점 이상 : 4점

30점 이상 : 3점

20점 이상 : 2점

기타 : 1점